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74
----------	-------

발의연월일 : 2026. 3. 26.

발 의 자 : 김예지 · 김대식 · 고동진
정성국 · 박덕흠 · 송석준
이소희 · 최수진 · 김소희
임종득 · 서미화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수교육교원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2024년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으로 인해 과도한 수업시수에 시달리던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과밀 특수학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교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나아가 코로나19 시기 원격수업이 이루어졌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비장애인 중심의 원격수업 환경에서 소외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향후 원격수업이 일어날 때를 대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과 함께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5호, 제21조제5항·제6항 신설, 제27조 및 제27조의2 신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양성”을 “확보·양성”으로 한다.

제21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특수교육교원을”을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의 정보 격차 해소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4인”을 각각 “2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학교”를 “중학교·고등학교”로, “6인”을 각각 “4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7

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특수교육교원을 두어야 한다.

②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 2인당 1인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특수교육교원은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특수교육교원은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교원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가 4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 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특수교육교원의 <u>양성</u> 및 연 수	5. ----- <u>확보 · 양성</u> - -----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통합교육) ① ~ ④ (생 략)	제21조(통합교육) ① ~ ④ (현행 과 같음)
<u><신 설></u>	<u>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 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초 · 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제1 호에 따른 원격수업(이하 “원 격수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 자의 정보 격차 해소 등을 포 함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u>

<신 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⑦ -----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

-----.

1. -----
-----2인-----

-----2인-----
-----.

2. -----중학교·고등학교-----

-----4인-----
-----4인-----

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 (생략)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27조의2(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특수교육교원을 두어야 한다.

②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 2인당 1인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 발전,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특

수교육교원은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특수교육교원은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교원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가 4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